

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40 증권투자신탁(H)[채권혼합]

2. 변경 사유:

-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 반영

3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5 년 03 월 21 일

4. 변경 주요 내용:

[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 전			정정 후		
요약정보						
투자비용	-			<업데이트>		
운용전문인력	-			<업데이트>		
제2부	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		<업데이트>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		<업데이트>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	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 투자대상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	
	투자대상		투자비율	투자대상		투자비율
	⑥	집합투자증권등	5% 이하	⑥	집합투자증권등	40% 이하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	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 투자제한] ▪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		
	투자대상 종류	투자제한의 내용		투자대상 종류	투자제한의 내용	
	집합투자 증권 투 자	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	집합투자 증권 투 자	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(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	

	<생략> <신설>	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<생략, 현행과 같음>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 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 업규정 제4-52조 제2항에서 정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 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 지 투자할 수 있다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 [중국주식시장 개요] -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위험관리 [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] [중국주식시장 개요] <업데이트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업데이트>
제4부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<업데이트>